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이강일·한정애·박상혁

강준현 • 복기왕 • 이연희

박수현 · 김용만 · 박범계

노종면 • 박민규 • 민병덕

천준호 • 유종군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,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,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, 종류 및 용도,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,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하기

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빈 건축물등 실태조사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, 이하"빈 건축물"이라 한다)이나 빈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(이하"빈 건축물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빈 건축물등 여부의 확인
- 2. 빈 건축물등의 종류 및 용도
- 3. 빈 건축물등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
- 4. 빈 건축물등의 권리관계 현황
- 5. 빈 건축물등의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빈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
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1조의3(빈 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등에 관한 각종 자료,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·관리하고 빈 건축물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, 이하 "빈 건축물"이라 한다)"을 "빈건축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빈 건축물등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빈 건축물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1조의2(빈 건축물등 실태조사)
	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
	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
	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
	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
	<u>니하는 건축물(「농어촌정비</u>
	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
	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
	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
	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,
	이하 "빈 건축물"이라 한다)이
	나 빈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
	물(이하 "빈 건축물등"이라 한
	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
	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
	<u>시하여야 한다.</u>
	1. 빈 건축물등 여부의 확인
	2. 빈 건축물등의 종류 및 용도
	3. 빈 건축물등의 관리 현황 및
	<u>방치기간</u>
	4. 빈 건축물등의 권리관계 현
	<u>황</u>
	5. 빈 건축물등의 발생 사유 등

<신 설>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 여 빈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41조의3(빈 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 등) ① 특별자치시장・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 • 구청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 등에 관한 각종 자료, 정보 등 을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하고 빈 건축물등을 효율적으로 정 비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

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전 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.
-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42조(빈 건축물 정비) 특별자치	제42조(빈 건축물 정비)
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	
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사용 여부</u>	<u>빈 건축물</u>
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	
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	
물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	
2호에 따른 빈집 및 「빈집 및	
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	
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	
빈집은 제외하며, 이하"빈 건	
축물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	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	
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	
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	
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	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	
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